

범어자이 입주자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또는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관련 건본주택 운영 안내

- 범어자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건본주택 관람 시 입장 인원 및 운영 시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범어자이 홈페이지(<https://xi.co.kr/DGB>)를 통해 분양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분양 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 대상자, 감염병 의심자 등 코로나19 국내 집단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 건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 열화상카메라를 통한 체온 37.5도가 넘는 경우
 - * 손소독제, 비접촉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나는 유증상 의심자는 건본주택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건본주택 관람,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범어자이 홈페이지에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범어자이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건본주택 방문안내

- 당첨자발표일 이후 당첨자에 한하여 사전서류 제출 및 자격검증, 정당계약시 방문 예약을 통해 방문이 가능합니다. (당첨자 또는 대리인 외 동반자 1인 포함 입장 가능)
- 당첨자 사전서류 제출 및 정당계약은 범어자이 홈페이지(<https://xi.co.kr/DGB>) 방문예약시스템 등을 통해 사전 예약하신 분(예약자 외 동반자 1인 포함)에 한하여 입장이 가능합니다.

■ 범어자이는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화상담(☎1544-7720)을 시행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 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과 관련한 전화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 또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2.02.2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6.23.입니다. (청약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 구성원, 지역 우선, 무주택기간 등의 청약 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수성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
-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수성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 (당첨일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제1항제6호)	10년간

-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해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해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6.23.)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5조 및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7-164호(2017.09.20.)에 의거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2021.06.23. 이전부터 계속거주)자가 대구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자보다 우선하며, 대구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1순위 청약 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 구분하여 접수하오니 청약 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대구광역시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계속하여 거주해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대구광역시)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대구광역시)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대구광역시)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대구광역시)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 2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 3, 제2조의 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2순위)
세대주 요건	필요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 기간이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 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신청구분	공동인증서 (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 민간임대	○	○	○	○
APT 무순위 / 잔여 세대 / 취소후재공급	○	○	X	X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 순위(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 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공급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공급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 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

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 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로도 신청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 당첨 인정, 후 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xi.co.kr/DGB>)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 수 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인 대구광역시 수성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 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신고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외 주택 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의 기재 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대출 관련 유의사항 : 중도금대출은 개인의 주택소유, 대출유무, 분양권 소유 여부 및 정부정책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상이하며 개인별로 대출금액이 축소되거나 대출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되어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등 대출제한이 적용되며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이 세대당 1건으로 강화되어있습니다.

■ 최초 분양계약체결 시 계약자의 부담으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고 소인처리) 또한, 인지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문제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수성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법」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제73조제1항 별표3에 의거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다만,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5년)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 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 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101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 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 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알선자 포함)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 2020.0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제19조 제4항에 의거 대구광역시에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상 거주 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해당/기타)하여 접수하오니 청약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 접수	당첨자 계약체결
	해당지역 (대구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	기타지역 (대구광역시 1년 미만 / 경북 거주자)	대구광역시 / 경북 거주자			
일정	2022.07.04.(월)	2022.07.05.(화)	2022.07.06.(수)	2022.07.14.(목)	정당당첨자 : 2022.07.17.(일) ~ 07.20(수) 예비입주자 : 2022.07.21.(목) ~ 07.23(토)	2022.07.25.(월)~ 07.28(목) (4일간)
방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 Home 로그인 후 조회가능)	건본주택 방문 접수 (10:00 ~ 16:00)	
장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당사 건본주택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43-18) ※ 일정 및 운영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개별통보 예정)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 주체에 이의제기할 수 없습니다.
- 2022.02.28.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건축과 - 33203호(2022.06.21.)」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 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48-26번지 일원
- 공급 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6층 ~ 지상 최고 34층, 4개동, 아파트 총39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 예정 시기 : 2026년 02월 예정(정확한 입주 일자는 추후 통보함)

공급대상

(단위: m², 세대)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	약식 표기	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	주거 공용	소계					
민영 주택	2022000358	01	084.9639A	84A	84.9639	31.6180	116.5819	61.9859	178.5678	16.3636	153	5
		02	084.9394B	84B	84.9394	30.9087	115.8481	61.9670	177.8151	16.3589	32	1
		03	084.9874C	84C	84.9874	30.8289	115.8163	62.0033	177.8196	16.3682	93	3
		04	084.9914D	84D	84.9914	30.3625	115.3539	62.0064	177.3603	16.3689	60	2
		05	084.9963E	84E	84.9963	30.9416	115.9379	62.0096	177.9475	16.3699	31	1
		06	114.9694	114	114.9694	41.4073	156.3767	83.8766	240.2533	22.1426	30	1
합계											399	13

- 면적합산 시 소수점 5자리에서 단수조정으로 계산한 값이 적용되어 소수점 4자리로 산정하였으며,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분양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을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기계/전기실, 부대복리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지지분은 세대별 주택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으며, 아파트 각 세대별, 근린상가의 각 실별 대지지분은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되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고, 각각의 반올림에 대한 오차는 적정 할애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 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계약 시 면적이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문 등으로 동 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 ※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식 표기	동 구분 (라인)	층 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계	1차	2차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입주 지정기간	
								계약시	2022.08.23	2022.12.13	2023.07.13	2024.02.13	2024.08.13	2025.02.13	2025.08.13		
84A	101동 1호 104동 1호	2층	2	345,000,000	548,000,000	-	893,000,000	10,000,000	79,300,000	89,300,000	89,300,000	89,300,000	89,300,000	89,300,000	89,300,000	89,300,000	267,900,000
		3층	2	352,700,000	560,300,000	-	913,000,000	10,000,000	81,300,000	91,300,000	91,300,000	91,300,000	91,300,000	91,300,000	91,300,000	91,300,000	273,900,000
		4층~9층	12	360,100,000	571,900,000	-	932,000,000	10,000,000	83,200,000	93,200,000	93,200,000	93,200,000	93,200,000	93,200,000	93,200,000	93,200,000	279,600,000
		10층~19층	18	365,500,000	580,500,000	-	946,000,000	10,000,000	84,600,000	94,600,000	94,600,000	94,600,000	94,600,000	94,600,000	94,600,000	94,600,000	283,800,000
		20~29층	20	369,300,000	586,700,000	-	956,000,000	10,000,000	85,600,000	95,600,000	95,600,000	95,600,000	95,600,000	95,600,000	95,600,000	95,600,000	286,800,000
		30층 이상	6	371,300,000	589,700,000	-	961,000,000	10,000,000	86,100,000	96,100,000	96,100,000	96,100,000	96,100,000	96,100,000	96,100,000	96,100,000	288,300,000
	102동 5호 103동 3호 104동 3호	2층	3	335,000,000	532,000,000	-	867,000,000	10,000,000	76,700,000	86,700,000	86,700,000	86,700,000	86,700,000	86,700,000	86,700,000	86,700,000	260,100,000
		3층	3	342,300,000	543,700,000	-	886,000,000	10,000,000	78,600,000	88,600,000	88,600,000	88,600,000	88,600,000	88,600,000	88,600,000	88,600,000	265,800,000
		4층~9층	18	349,600,000	555,400,000	-	905,000,000	10,000,000	80,500,000	90,500,000	90,500,000	90,500,000	90,500,000	90,500,000	90,500,000	90,500,000	271,500,000
		10층~19층	27	355,000,000	564,000,000	-	919,000,000	10,000,000	81,900,000	91,900,000	91,900,000	91,900,000	91,900,000	91,900,000	91,900,000	91,900,000	275,700,000
		20~29층	30	358,500,000	569,500,000	-	928,000,000	10,000,000	82,800,000	92,800,000	92,800,000	92,800,000	92,800,000	92,800,000	92,800,000	92,800,000	278,400,000
		30층 이상	12	360,500,000	572,500,000	-	933,000,000	10,000,000	83,300,000	93,300,000	93,300,000	93,300,000	93,300,000	93,300,000	93,300,000	93,300,000	279,900,000
84B	103동 2호	2층	1	340,000,000	540,000,000	-	880,000,000	10,000,000	78,000,000	88,000,000	88,000,000	88,000,000	88,000,000	88,000,000	88,000,000	88,000,000	264,000,000
		3층	1	347,300,000	551,700,000	-	899,000,000	10,000,000	79,900,000	89,900,000	89,900,000	89,900,000	89,900,000	89,900,000	89,900,000	89,900,000	269,700,000
		4층~9층	6	354,700,000	563,300,000	-	918,000,000	10,000,000	81,800,000	91,800,000	91,800,000	91,800,000	91,800,000	91,800,000	91,800,000	91,800,000	275,400,000
		10층~19층	9	360,100,000	571,900,000	-	932,000,000	10,000,000	83,200,000	93,200,000	93,200,000	93,200,000	93,200,000	93,200,000	93,200,000	93,200,000	279,600,000
		20~29층	10	363,900,000	578,100,000	-	942,000,000	10,000,000	84,200,000	94,200,000	94,200,000	94,200,000	94,200,000	94,200,000	94,200,000	94,200,000	282,600,000
		30층 이상	5	365,500,000	580,500,000	-	946,000,000	10,000,000	84,600,000	94,600,000	94,600,000	94,600,000	94,600,000	94,600,000	94,600,000	94,600,000	283,800,000
84C	101동 3호 102동 3호 103동 1호	2층	3	336,100,000	533,900,000	-	870,000,000	10,000,000	77,000,000	87,000,000	87,000,000	87,000,000	87,000,000	87,000,000	87,000,000	87,000,000	261,000,000
		3층	3	343,500,000	545,500,000	-	889,000,000	10,000,000	78,900,000	88,900,000	88,900,000	88,900,000	88,900,000	88,900,000	88,900,000	88,900,000	266,700,000
		4층~9층	18	350,800,000	557,200,000	-	908,000,000	10,000,000	80,800,000	90,800,000	90,800,000	90,800,000	90,800,000	90,800,000	90,800,000	90,800,000	272,400,000
		10층~19층	27	356,200,000	565,800,000	-	922,000,000	10,000,000	82,200,000	92,200,000	92,200,000	92,200,000	92,200,000	92,200,000	92,200,000	92,200,000	276,600,000
		20~29층	30	359,700,000	571,300,000	-	931,000,000	10,000,000	83,100,000	93,100,000	93,100,000	93,100,000	93,100,000	93,100,000	93,100,000	93,100,000	279,300,000
		30층 이상	12	361,600,000	574,400,000	-	936,000,000	10,000,000	83,600,000	93,600,000	93,600,000	93,600,000	93,600,000	93,600,000	93,600,000	93,600,000	280,800,000
84D	101동 2호	2층	1	339,600,000	539,400,000	-	879,000,000	10,000,000	77,900,000	87,900,000	87,900,000	87,900,000	87,900,000	87,900,000	87,900,000	87,900,000	263,700,000
		3층	1	346,900,000	551,100,000	-	898,000,000	10,000,000	79,800,000	89,800,000	89,800,000	89,800,000	89,800,000	89,800,000	89,800,000	89,800,000	269,400,000
		4층~9층	6	354,300,000	562,700,000	-	917,000,000	10,000,000	81,700,000	91,700,000	91,700,000	91,700,000	91,700,000	91,700,000	91,700,000	91,700,000	275,100,000
		10층~19층	9	359,700,000	571,300,000	-	931,000,000	10,000,000	83,100,000	93,100,000	93,100,000	93,100,000	93,100,000	93,100,000	93,100,000	93,100,000	279,300,000
		20~29층	10	363,500,000	577,500,000	-	941,000,000	10,000,000	84,100,000	94,100,000	94,100,000	94,100,000	94,100,000	94,100,000	94,100,000	94,100,000	282,300,000
		30층 이상	3	365,500,000	580,500,000	-	946,000,000	10,000,000	84,600,000	94,600,000	94,600,000	94,600,000	94,600,000	94,600,000	94,600,000	94,600,000	283,800,000
	101동 4호	2층	1	329,900,000	524,100,000	-	854,000,000	10,000,000	75,400,000	85,400,000	85,400,000	85,400,000	85,400,000	85,400,000	85,400,000	85,400,000	256,200,000
		3층	1	336,900,000	535,100,000	-	872,000,000	10,000,000	77,200,000	87,200,000	87,200,000	87,200,000	87,200,000	87,200,000	87,200,000	87,200,000	261,600,000

약식 표기	동 구분 (라인)	층 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계	1차	2차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입주 지정기간	
								계약시	2022.08.23	2022.12.13	2023.07.13	2024.02.13	2024.08.13	2025.02.13	2025.08.13		
		4층~9층	6	343,800,000	546,200,000	-	890,000,000	10,000,000	79,000,000	89,000,000	89,000,000	89,000,000	89,000,000	89,000,000	89,000,000	89,000,000	267,000,000
		10층~19층	9	349,300,000	554,700,000	-	904,000,000	10,000,000	80,400,000	90,400,000	90,400,000	90,400,000	90,400,000	90,400,000	90,400,000	90,400,000	271,200,000
		20~29층	10	352,700,000	560,300,000	-	913,000,000	10,000,000	81,300,000	91,300,000	91,300,000	91,300,000	91,300,000	91,300,000	91,300,000	91,300,000	273,900,000
		30층 이상	3	354,700,000	563,300,000	-	918,000,000	10,000,000	81,800,000	91,800,000	91,800,000	91,800,000	91,800,000	91,800,000	91,800,000	91,800,000	275,400,000
84E	102동 4호	2층	1	328,400,000	521,600,000	-	850,000,000	10,000,000	75,000,000	85,000,000	85,000,000	85,000,000	85,000,000	85,000,000	85,000,000	85,000,000	255,000,000
		3층	1	335,300,000	532,700,000	-	868,000,000	10,000,000	76,800,000	86,800,000	86,800,000	86,800,000	86,800,000	86,800,000	86,800,000	86,800,000	260,400,000
		4층~9층	6	342,300,000	543,700,000	-	886,000,000	10,000,000	78,600,000	88,600,000	88,600,000	88,600,000	88,600,000	88,600,000	88,600,000	88,600,000	265,800,000
		10층~19층	9	347,700,000	552,300,000	-	900,000,000	10,000,000	80,000,000	90,000,000	90,000,000	90,000,000	90,000,000	90,000,000	90,000,000	90,000,000	270,000,000
		20~29층	10	351,200,000	557,800,000	-	909,000,000	10,000,000	80,900,000	90,900,000	90,900,000	90,900,000	90,900,000	90,900,000	90,900,000	90,900,000	272,700,000
		30층 이상	4	352,700,000	560,300,000	-	913,000,000	10,000,000	81,300,000	91,300,000	91,300,000	91,300,000	91,300,000	91,300,000	91,300,000	91,300,000	273,900,000
114	104동 2호	2층	1	433,090,000	688,100,000	68,810,000	1,190,000,000	10,000,000	109,000,000	119,000,000	119,000,000	119,000,000	119,000,000	119,000,000	119,000,000	119,000,000	357,000,000
		3층	1	442,140,000	702,600,000	70,260,000	1,215,000,000	10,000,000	111,500,000	121,500,000	121,500,000	121,500,000	121,500,000	121,500,000	121,500,000	121,500,000	364,500,000
		4층~9층	6	451,190,000	717,100,000	71,710,000	1,240,000,000	10,000,000	114,000,000	124,000,000	124,000,000	124,000,000	124,000,000	124,000,000	124,000,000	124,000,000	372,000,000
		10층~19층	9	458,200,000	728,000,000	72,800,000	1,259,000,000	10,000,000	115,900,000	125,900,000	125,900,000	125,900,000	125,900,000	125,900,000	125,900,000	125,900,000	377,700,000
		20~29층	10	462,840,000	735,600,000	73,560,000	1,272,000,000	10,000,000	117,200,000	127,200,000	127,200,000	127,200,000	127,200,000	127,200,000	127,200,000	127,200,000	381,600,000
		30층 이상	3	465,780,000	740,200,000	74,020,000	1,280,000,000	10,000,000	118,000,000	128,000,000	128,000,000	128,000,000	128,000,000	128,000,000	128,000,000	128,000,000	384,000,000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단위 : m²)

공고상 주택형	84.9639	84.9394	84.9874	84.9914	84.9963	114.9694
약식 표기	84A	84B	84C	84D	84E	114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건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사항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인지세가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종합토지세 등)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
-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 선택품목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입니다. (필로티 있는 동은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 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 일자에는 예정일자로,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 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하며, 연체료 납부 시 토, 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 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 바랍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개시 전 특정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 점검토록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이 적용되며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대출 협약은행과 별도의 중도금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 및 본인의 부적격 사유, 정부정책에 따른 대출제한 등으로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없습니다.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사업주체, 시공사 및 중도금 대출기관과 체결되는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하여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자는 시행위탁자가 대납하고 입주시 정산하기로 하며, 입주 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 발생한 중도금 대출이자자는 계약자가 부담하므로 중도금 대출기관에 직접납부 해야 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부적격자로 판명됨으로 인한 청약예금 통장 사용불가 등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시공사, 분양대행사 등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본 불가).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 주체가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조건은 판매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시에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모든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광고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일반공급 신청자격 기본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 양육, 형제자매 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재외 동포, 재외국민, 외국 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 신청자 중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5조 및 「대구광역시고시」 제2017-164호(2017.09.20.)에 의거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대구광역시 1년 미만 계속 거주 및 경상북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대구광역시 1년 미만 계속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은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24개월) 입주자저축 요건 충족 시 1순위 청약 가능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청약 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사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단,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사전청약주택 및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행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 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① 청약 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② 청약예금 지역 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 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 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 구간의 청약 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 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청약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 ①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②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③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의 가점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본 아파트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향후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적용 제한자로 관리됩니다.
- 청약접수 방식
 - 주택형별로 층, 동, 호 구분 없이 일반공급 1순위(해당지역), 일반공급 1순위(기타지역), 일반공급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일반 공급세대수의 500%)에 미달 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역 판단 시 유의사항
 - 대구광역시(해당지역)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
 - 기타지역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자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 관련 신청자격
민영주택	1순위	전용 85㎡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 (100%) 적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 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 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전용 85㎡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초과 : 가점제 (50%), 추첨제(50%) 적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 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제한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분은 당 주택에 1순위 청약 불가합니다. (2순위로 청약 가능)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세대주가 아닌자 ② 과거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전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③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부금 포함)에 가입하여 2년 및 해당 지역별 예치기준 금액에 충족하지 않은 자
	2순위	전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 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성인인 자
		청약제한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에 의거 재당첨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2순위 청약불가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 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2]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분	내용
<p>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p>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p> <p>2)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p> <p>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p> <p>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p>
<p>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p>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p>※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p>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p>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p>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p>	<p>■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p>
<p>④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p>	<p>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p>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비고
① 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분리세대 또는 단독세대의 경우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만18세 이상~만30세 미만: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만30세 이상: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총점	84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제28조 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주택 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신청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또는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 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매매 등 처분 사실은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대장등본 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며, 주택 면적은 지분 비율만큼이 아니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 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 주체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12.11.) 부칙 제3조]
 1.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 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 소유로 봄)
 2.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주택 및 분양권 등 처분 기준일 (1, 2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2의 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 3. 제2조 제7호의2 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 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 밖에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 [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한 경우의 특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 및 별표1 제1항 가목)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60㎡이하이며,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도권 1억 3천만원(비수도권 8천만원)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으로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등” 보유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함. 다만,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릅니다.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③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에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4항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한다. (동법 제57조 제7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예비입주자의 신청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 동점이거나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되며, 동호수 배정 참여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신청 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일반공급	1순위	해당지역 (대구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	2022.07.04.(월) 09: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기타지역 (대구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경상북도 거주자)	2022.07.05.(화) 09:00~17:30		
	2순위		2022.07.06.(수) 09:00~17:30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 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 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 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 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명단은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은행 창구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 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 기간은 주택 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 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 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청약통장으로 효력 상실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 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 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 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 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 시]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 신청」 ⇒ 「APT 청약 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 시] 스마트폰 앱(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 신청」 ⇒ 「APT 청약 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 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

여중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 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 신청」⇒「APT 청약 신청」⇒「Step 2. 주택형 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 날부터 일반공급 청약 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 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 구성원 등록/조회」⇒「세대 구성원 동의」⇒「청약자격 사전관리 신청」. 단, 세대 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 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 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 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 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 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 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본인 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수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수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 서명확인 방식
인감증명 방식	본인 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수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수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지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여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구분	선정방법
<p>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추첨제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적용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나머지 5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대구광역시 1년 미만 거주 및 경상북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p>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당첨자발표 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일반공급	1순위	해당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2022.07.14. (목)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개별조회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기타지역	
	2순위		

※ 당첨자에 대한 동·호수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해 배정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은행 창구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 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 기간은 주택 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 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 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 (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안내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한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https://xi.co.kr/DGB)을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모든 은행 청약자)	
이용 기간	2022.07.14.(목)~2022.07.23.(토) (10일간)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 조회 → 당첨조회(최근 10일) - 스마트폰 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당첨사실 조회하기(아파트)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2.07.14.(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 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 > 청약 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추첨, 계약 등) 일정은 당사 홈페이지(<https://xi.co.kr/DGB>)게시 또는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함)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 정당 당첨자 계약여부 및 부적격소명 등에 따라 예비입주자의 공급이 없을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공급물량 발생 시 주택형별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추첨)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세대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 신청한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후순위 예비입주자의 가점 초과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후순위의 예비입주자의 가점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되며 동호수 배정 참여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V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을 위해 아래 제출기한까지 공급(당첨)유형별 자격확인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간	서류제출 장소
정당 당첨자	2022.07.17.(일)~2022.07.20.(수) 10:00~16:00까지	범어자이 건본주택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43-18) *사전방문 예약제로 접수예정이나 정부방침에 따라 변동 가능
예비입주자	2022.07.21.(목)~2022.07.23.(토) 10:00~16:00까지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사전 서류제출 기간 내에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해당 거주기간, 거주지역, 주택 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부적격 처리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간 이내 방문이 불가한 입주대상자는 건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 기간 이내에 자격확인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단, 이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절차로 계약 진행이 상당 시간 지연될 수 있으며, 제출 서류상 누락 등 자격확인이 어려운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부적격 의심 사유가 있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업 주체가 요구하는 소명에 필요한 서류를 소명 기간 내(계약체결 이전)에 반드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 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구비서류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		무주택서약서	본인	건본주택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	건본주택 비치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용도 : 아파트 계약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인 계약 불가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 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본인 서명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세대구성사유(일자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배우자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세대원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발급기간 : 당첨자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Y로 발급(주민센터 또는 정부24) ※ 단,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직계존속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30세 미만 미혼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30세 이상 미혼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7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복무확인서	본인
가점제 당첨자 / 예비입주자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 추가 증빙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피부양 직계비속	만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 추가 증빙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배우자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만 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피부양 직계비속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장소에 비치
	○	신분증, 인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 멸실신고서 -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자	-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서류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전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구비서류를 사전에 제출하고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소유여부,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자격 확인 불가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서류만 인정합니다.

VI

계약체결 안내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계약 기간	계약장소
정당당첨자 계약체결	2022.07.25.(월)~2022.07.28.(목) 4일간 10:00~16:00	범어자이 견본주택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43-18) *사전방문 예약제로 접수예정이나 정부방침에 따라 변동 가능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 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기간 내 공급계약서 미발행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당첨자의 계약 기간은 주택 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 사실 전산검색 등 청약자격 유무 판단 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제출하여 부적격당첨 소명 기간(7일)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이 유지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은 사업 주체가 반환해주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사업 주체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85㎡ 초과 주택형 및 발코니 확장비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1차, 2차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신용협동조합	131-021-703471	케이비부동산신탁(주)

- 분양대금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 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 후 견본주택 방문하여 계약체결을 완료하셔야 합니다(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201홍길동'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차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 주체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 서류	발급대상	확인 및 유의사항
본인 계약 시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본인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본인 발급용)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증빙자료 포함)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별 객관적 증빙자료 필수 제출
	○		인지세 납부 전자수입인지		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매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해당자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대리인 계약 시 (본인 이외)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용)
	○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 비치
	○		대리인의 신분증, 인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외국 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반드시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당첨자 계약체결 기간 준수**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지정 계약 기간은 주택 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 사실 여부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 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정당 당첨자 계약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기간 종료 이후 부적격세대 및 미계약세대 발생 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예비입주자 공급 이후 잔여세대 발생 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접수의 방법으로 추첨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지정 계약 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로 확인한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고,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③ 청약기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로 기재한 경우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합니다.)

-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 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 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은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지면적이 차후 분할로 인하여 면적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단, 세대당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행정구역, 단지 내 명칭 및 동·호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됩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권 전매 요청시 당해 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취급기관은 양수자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자가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 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 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 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 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지역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로 해당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 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①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계약자 중도금대출 안내

- 본 아파트는 중도금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중도금 용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출금융기관 등 결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지정한 대출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대출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관계법령 및 정부 정책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 담보대출유무, 중도금대출 여부 및 주택의 공급 지역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별로 상이하며, 개인별로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또한,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거소 요건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대출 여부를 확인 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대출협약이 미체결 되거나, 대출협약체결의 지연, 중도금대출 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대출불가 또는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급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대출불가 또는 제한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지정된 중도금 대출금융기관에서 중도금 금융대출을 실시하여,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과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중도금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공급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대출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대출 협약 조건(이자후불제)에 의거 계약금(1차, 2차)완납 이후 중도금대출이 가능하며, 계약금 미납 시 중도금대출이 불가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의 선납할인율 및 연체이자 등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금융기관의 중도금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공급계약서에 따라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였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시행위탁자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대납 이자를 사업주체에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취급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시행위탁자가 대납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지정하지 않은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 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하므로, 계약자가 대출이자를 해당 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행위탁자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급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금융기관에 중도금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취급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등은 대출취급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계약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취급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 상담 시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취급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 여부가 결정됨. 이에 고객의 대출 비용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상담 시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대출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관계법령 및 정부 정책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 담보대출유무, 중도금대출 여부 및 주택의 공급 지역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별로 상이하하며, 개인별로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대출 신청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 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Ⅶ

추가 선택품목

추가 선택품목 공통 유의사항

(단위: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발코니확장], [플러스옵션], [가전 옵션 선택품목]은 아파트 공급대금(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구입 의사가 있는 분양계약자는 공급계약 체결 이후 선택 계약하는 사항입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판매·진행되며, 계약 일정, 계약 내용, 납부방법, 납부계좌, 계약 주체, 제품 관련 사항 등은 추후 계약자를 대상으로 별도 통보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시공상의 일정 관계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추가 선택품목 계약 일정은 옵션별 상이하하며, 자세한 일정은 추후통보 예정임)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급계약에 부수되는 마감 공사 관련으로 소요 자재를 선 발주하여 미리 확보하여야 하고, 특히 계약 이후에는 계약해제, 변경 시 원상회복, 변경공사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는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중도금 납입(회차 구분 시 1회차 납입 기준)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구청으로부터 취득세 부과 대상이며, 이는 공급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택형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금 (80%)
		계약 시	2022년 12월 13일	입주지정일
84A	36,000,000	3,600,000	3,600,000	28,800,000
84B	36,000,000	3,600,000	3,600,000	28,800,000
84C	36,000,000	3,600,000	3,600,000	28,800,000
84D	36,000,000	3,600,000	3,600,000	28,800,000
84E	35,000,000	3,500,000	3,500,000	28,000,000
114	48,000,000	4,800,000	4,800,000	38,400,000

발코니 확장 공급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KB국민은행	676301-04-280688	케이비부동산신탁(주)
중도금 · 잔금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 상기 발코니 확장 공급대금 납부계좌는 공동주택 및 플러스옵션 공급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201홍길동'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공급계약서에 명기된 세대별 전용계좌(가상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 발코니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택하여 계약하는 별도 계약 품목으로 분양가에는 미포함 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발코니확장 공급대금은 일괄 확장(일부 발코니, 주방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 등은 제외)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확장 공간 제외 발코니의 위치는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선호도,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고,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습니다. (일부 유무상 옵션 타입 반영)
- 발코니 확장 부위 표기의 '거실', '침실1' 등의 표현은 카탈로그 기준이며, '계약자 선택사항 및 유의사항'을 계약자가 직접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되어 있으며, 추후 분양계약자가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공간 활용도가 저하되거나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고 견본주택과 상이한 내부 공간구성 및 인테리어(기본제공품목 제한 적용)가

적용되며, 외부창호 미설치에 따른 개별 설치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입주 후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인접 세대 관련 사항 등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간 구성상 플러스옵션이나 가전 옵션 선택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청약 및 계약체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 선택 시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의 발코니가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창호가 미설치되며, 상층 및 하층세대 단열 및 배수설계를 위해 발코니의 천장고 및 창호 높이가 축소 시공되고, 발코니 내부 폭 및 크기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미확장 시에는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 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되거나 결로 발생(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익제기 불가)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계되었으며, 사용승인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는 계획용도에 따라 수전, 드레인 또는 선흡통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치와 개수가 변경될 수 있고,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사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발코니 확장면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해당공간은 결로 방지용 단열재가 설치되거나 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 설치 등으로 인한 천장 및 벽체 돌출, 우물천장 크기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플러스옵션 ※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 가능

- 플러스옵션 설치 위치 및 품목은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및 품목을 지정 선택할 수 없습니다.
- 플러스옵션 선택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 계획, 일부 공간의 조명 등이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된 마감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감 Style Up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타입)	세부사항		설치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기본형	옵션형		계약시	2022.12.13	입주지정일
84A	친환경 실크벽지(거실후면·복도·현관·거실창호 주위 벽) 중국산 포셀린타일 거실 아트월	유럽산 포셀린타일(거실후면·거실 아트월·복도(일부) 벽) 시트판넬(현관·복도(일부)·거실창호 주위 벽)	2,050,000	205,000	205,000	1,640,000
84B	친환경 실크벽지(거실후면·복도·현관·거실창호 주위 벽) 중국산 포셀린타일 거실 아트월	유럽산 포셀린타일(거실후면·거실 아트월·복도(일부) 벽) 시트판넬(현관·복도(일부)·거실창호 주위 벽)	2,290,000	229,000	229,000	1,832,000
84C	친환경 실크벽지(거실후면·복도·현관·거실창호 주위 벽) 중국산 포셀린타일 거실 아트월	유럽산 포셀린타일(거실후면·거실 아트월·복도(일부) 벽) 시트판넬(현관·복도(일부)·거실창호 주위 벽)	2,280,000	228,000	228,000	1,824,000
84D	친환경 실크벽지(거실후면·복도·현관·거실창호 주위 벽) 중국산 포셀린타일 거실 아트월	유럽산 포셀린타일(거실후면·거실 아트월·복도(일부) 벽) 시트판넬(현관·복도(일부)·거실창호 주위 벽)	2,530,000	253,000	253,000	2,024,000
84E	친환경 실크벽지(거실후면·복도·현관·거실창호 주위 벽) 중국산 포셀린타일 거실 아트월	유럽산 포셀린타일(거실후면·거실 아트월·복도(일부) 벽) 시트판넬(현관·복도(일부)·거실창호 주위 벽)	2,380,000	238,000	238,000	1,904,000
114	친환경 실크벽지(거실후면·복도·현관·거실창호 주위 벽) 중국산 포셀린타일 거실 아트월	유럽산 포셀린타일(거실후면·거실 아트월·복도(일부) 벽) 시트판넬(현관·복도(일부)·거실창호 주위 벽)	2,880,000	288,000	288,000	2,304,000

조명 Style Up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타입)	세부사항		설치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기본형	옵션형		계약시	2022.12.13	입주지정일
84A	기본 LED 등 (거실·침실)	특화조명(디밍기능 추가, 거실·침실), 거실 우물천장 내 간접조명 및 등BOX, 아트월 및 복도 리니어 조명 및 리니어 조명 등BOX, 신발장 하부 간접 조명	3,650,000	365,000	365,000	2,920,000
84B	기본 LED 등 (거실·침실)	특화조명(디밍기능 추가, 거실·침실), 거실 우물천장 내 간접조명 및 등BOX, 아트월 및 복도 리니어 조명 및 리니어 조명 등BOX, 신발장 하부 간접 조명	3,710,000	371,000	371,000	2,968,000
84C	기본 LED 등 (거실·침실)	특화조명(디밍기능 추가, 거실·침실), 거실 우물천장 내 간접조명 및 등BOX, 아트월 및 복도 리니어 조명 및 리니어 조명 등BOX, 신발장 하부 간접 조명	3,720,000	372,000	372,000	2,976,000
84D	기본 LED 등 (거실·침실)	특화조명(디밍기능 추가, 거실·침실), 거실 우물천장 내 간접조명 및 등BOX, 아트월 및 복도 리니어 조명 및 리니어 조명 등BOX, 신발장 하부 간접 조명	3,770,000	377,000	377,000	3,016,000
84E	기본 LED 등 (거실·침실)	특화조명(디밍기능 추가, 거실·침실), 거실 우물천장 내 간접조명 및 등BOX, 아트월 및 복도 리니어 조명 및 리니어 조명 등BOX, 신발장 하부 간접 조명	3,620,000	362,000	362,000	2,896,000
114	기본 LED 등 (거실·침실)	특화조명(디밍기능 추가, 거실·침실), 거실 우물천장 내 간접조명 및 등BOX, 아트월 및 복도 리니어 조명 및 리니어 조명 등BOX, 신발장 하부 간접 조명	4,320,000	432,000	432,000	3,456,000

주방 Style Up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타입)	세부사항		설치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기본형	옵션형		계약시	2022.12.13	입주지정일
84A	엔지니어드스톤 주방상판, 타일 주방벽, 친환경 실크벽지(냉장고장 후면·기타 면)	세라믹패널 주방상판, 유럽산포셀린타일 주방벽, 흠바형 장식장, 고급형 주방상판 매입콘센트	5,820,000	582,000	582,000	4,656,000
84B	엔지니어드스톤 주방상판, 타일 주방벽, 친환경 실크벽지(냉장고장 후면·기타 면)	세라믹패널 주방상판, 유럽산포셀린타일 주방벽, 고급형 주방상판 매입콘센트	2,320,000	232,000	232,000	1,856,000
84C	엔지니어드스톤 주방상판, 타일 주방벽, 친환경 실크벽지(냉장고장 후면·기타 면)	세라믹패널 주방상판, 유럽산포셀린타일 주방벽, 고급형 주방상판 매입콘센트	2,300,000	230,000	230,000	1,840,000
84D	엔지니어드스톤 주방상판, 타일 주방벽, 친환경 실크벽지(냉장고장 후면·기타 면)	세라믹패널 주방상판, 유럽산포셀린타일 주방벽, 흠바형 장식장, 고급형 주방상판 매입콘센트	5,840,000	584,000	584,000	4,672,000
84E	엔지니어드스톤 주방상판, 타일 주방벽, 친환경 실크벽지(냉장고장 후면·기타 면)	세라믹패널 주방상판, 유럽산포셀린타일 주방벽, 흠바형 장식장, 고급형 주방상판 매입콘센트	5,940,000	594,000	594,000	4,752,000
114	엔지니어드스톤 주방상판, 타일 주방벽, 친환경 실크벽지(냉장고장 후면·기타 면)	세라믹패널 주방상판, 유럽산포셀린타일 주방벽, 흠바형 장식장, 고급형 주방상판 매입콘센트	5,840,000	584,000	584,000	4,672,000

다이닝 Style Up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타입)	세부사항		설치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기본형	옵션형		계약시	2022.12.13	입주지정일
84A	기본 LED 등	주방 우물천장 및 간접조명(등BOX 포함), 루버천장, 특화조명(블루투스 스피커 기능 포함)	1,310,000	131,000	131,000	1,048,000
84B	기본 LED 등	주방 우물천장 및 간접조명(등BOX 포함), 루버천장, 특화조명(블루투스 스피커 기능 포함)	1,390,000	139,000	139,000	1,112,000
84C	기본 LED 등	주방 우물천장 및 간접조명(등BOX 포함), 루버천장, 특화조명(블루투스 스피커 기능 포함)	1,310,000	131,000	131,000	1,048,000
84D	기본 LED 등	루버천장, 특화조명(블루투스 스피커 기능 포함)	890,000	89,000	89,000	712,000
84E	기본 LED 등	루버천장, 특화조명(블루투스 스피커 기능 포함)	890,000	89,000	89,000	712,000
114	기본 LED 등	주방 우물천장 및 간접조명(등BOX 포함), 루버천장, 특화조명(블루투스 스피커 기능 포함)	1,670,000	167,000	167,000	1,336,000

전동식 플랩상부장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타입)	세부사항		설치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기본형	옵션형		계약시	2022.12.13	입주지정일
84A	PP마감 여닫이장(침니형 렌지후드 포함)	전동식 플랩상부장(유럽산 하드웨어 및 독립형 렌지후드 포함)	4,760,000	476,000	476,000	3,808,000
84B	PP마감 여닫이장(침니형 렌지후드 포함)	전동식 플랩상부장(유럽산 하드웨어 및 독립형 렌지후드 포함)	4,780,000	478,000	478,000	3,824,000
84C	PP마감 여닫이장(침니형 렌지후드 포함)	전동식 플랩상부장(유럽산 하드웨어 및 독립형 렌지후드 포함)	4,780,000	478,000	478,000	3,824,000
84D	PP마감 여닫이장(침니형 렌지후드 포함)	전동식 플랩상부장(유럽산 하드웨어 및 독립형 렌지후드 포함)	4,760,000	476,000	476,000	3,808,000
84E	PP마감 여닫이장(침니형 렌지후드 포함)	전동식 플랩상부장(유럽산 하드웨어 및 독립형 렌지후드 포함)	4,760,000	476,000	476,000	3,808,000
114	PP마감 여닫이장(침니형 렌지후드 포함)	전동식 플랩상부장(유럽산 하드웨어 및 독립형 렌지후드 포함)	5,280,000	528,000	528,000	4,224,000

음성인식 주방TV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타입)	세부사항		설치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기본형	옵션형		계약시	2022.12.13	입주지정일
84A	10" 주방TV	13" 음성인식 주방TV	410,000	41,000	41,000	328,000
84B	10" 주방TV	13" 음성인식 주방TV	410,000	41,000	41,000	328,000
84C	10" 주방TV	13" 음성인식 주방TV	410,000	41,000	41,000	328,000
84D	10" 주방TV	13" 음성인식 주방TV	410,000	41,000	41,000	328,000
84E	10" 주방TV	13" 음성인식 주방TV	410,000	41,000	41,000	328,000
114	10" 주방TV	13" 음성인식 주방TV	410,000	41,000	41,000	328,000

욕실마감 Style Up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타입)	세부사항		설치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기본형	옵션형		계약시	2022.12.13	입주지정일
84A	도기질 타일 벽, 자기질 타일 바닥	유럽산 포셀린타일 벽·바닥	1,520,000	152,000	152,000	1,216,000
84B	도기질 타일 벽, 자기질 타일 바닥	유럽산 포셀린타일 벽·바닥	1,520,000	152,000	152,000	1,216,000
84C	도기질 타일 벽, 자기질 타일 바닥	유럽산 포셀린타일 벽·바닥	1,520,000	152,000	152,000	1,216,000
84D	도기질 타일 벽, 자기질 타일 바닥	유럽산 포셀린타일 벽·바닥	1,520,000	152,000	152,000	1,216,000
84E	도기질 타일 벽, 자기질 타일 바닥	유럽산 포셀린타일 벽·바닥	1,520,000	152,000	152,000	1,216,000
114	도기질 타일 벽, 자기질 타일 바닥	유럽산 포셀린타일 벽·바닥	1,520,000	152,000	152,000	1,216,000

욕실도기류 특화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타입)	세부사항		설치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기본형	옵션형		계약시	2022.12.13	입주지정일
84A	터치형 싱크수전, 부부욕실 비데 1개소	고급 수전 및 세면대(등 포함), 비데 일체형 양변기 2개소	3,980,000	398,000	398,000	3,184,000
84B	터치형 싱크수전, 부부욕실 비데 1개소	고급 수전 및 세면대(등 포함), 비데 일체형 양변기 2개소	3,980,000	398,000	398,000	3,184,000
84C	터치형 싱크수전, 부부욕실 비데 1개소	고급 수전 및 세면대(등 포함), 비데 일체형 양변기 2개소	3,980,000	398,000	398,000	3,184,000
84D	터치형 싱크수전, 부부욕실 비데 1개소	고급 수전 및 세면대(등 포함), 비데 일체형 양변기 2개소	3,980,000	398,000	398,000	3,184,000
84E	터치형 싱크수전, 부부욕실 비데 1개소	고급 수전 및 세면대(등 포함), 비데 일체형 양변기 2개소	3,980,000	398,000	398,000	3,184,000
114	터치형 싱크수전, 부부욕실 비데 1개소	고급 수전 및 세면대(등 포함), 비데 일체형 양변기 2개소	3,980,000	398,000	398,000	3,184,000

드레스룸 특화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타입)	세부사항		설치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기본형	옵션형		계약시	2022.12.13	입주지정일
84A	기본 드레스룸 선반	고급형 드레스룸(슬라이딩 도어+벽패널형선반+옷걸이봉(조명타입))	3,200,000	320,000	320,000	2,560,000
84B	기본 드레스룸 선반	고급형 드레스룸(슬라이딩 도어+벽패널형선반+옷걸이봉(조명타입))	3,200,000	320,000	320,000	2,560,000
84C	기본 드레스룸 선반	벽판넬형 드레스룸(벽패널형 선반+옷걸이봉(조명타입))	1,400,000	140,000	140,000	1,120,000
84D	기본 드레스룸 선반	벽판넬형 드레스룸(벽패널형 선반+옷걸이봉(조명타입))	900,000	90,000	90,000	720,000
84E	기본 드레스룸 선반	벽판넬형 드레스룸(벽패널형 선반+옷걸이봉(조명타입))	800,000	80,000	80,000	640,000
114	기본 드레스룸 선반	벽판넬형 드레스룸(벽패널형 선반+옷걸이봉(조명타입))	2,100,000	210,000	210,000	1,680,000

주택형(타입)	세부사항	설치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2.12.13	입주지정일
84A	3연동 자동 중문	2,500,000	250,000	250,000	2,000,000
84B	3연동 자동 중문	2,500,000	250,000	250,000	2,000,000
84C	3연동 자동 중문	2,500,000	250,000	250,000	2,000,000
84D	3연동 자동 중문	2,500,000	250,000	250,000	2,000,000
84E	3연동 자동 중문	2,500,000	250,000	250,000	2,000,000
114	3연동 자동 중문	2,500,000	250,000	250,000	2,000,000

바닥재

주택형(타입)	세부사항		설치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기본형	옵션형		계약시	2022.12.13	입주지정일	
84A	강마루(거실·주방·복도·각 침실)	선택1	유럽산 포셀린타일(거실·주방·복도)+원목마루(각 침실)	4,100,000	410,000	410,000	3,280,000
		선택2	유럽산 포셀린타일(거실·주방·복도)+강마루(각 침실)	1,700,000	170,000	170,000	1,360,000
		선택3	원목마루(거실·주방·복도·각 침실)	4,600,000	460,000	460,000	3,680,000
84B	강마루(거실·주방·복도·각 침실)	선택1	유럽산 포셀린타일(거실·주방·복도)+원목마루(각 침실)	4,200,000	420,000	420,000	3,360,000
		선택2	유럽산 포셀린타일(거실·주방·복도)+강마루(각 침실)	1,800,000	180,000	180,000	1,440,000
		선택3	원목마루(거실·주방·복도·각 침실)	4,800,000	480,000	480,000	3,840,000
84C	강마루(거실·주방·복도·각 침실)	선택1	유럽산 포셀린타일(거실·주방·복도)+원목마루(각 침실)	4,200,000	420,000	420,000	3,360,000
		선택2	유럽산 포셀린타일(거실·주방·복도)+강마루(각 침실)	1,800,000	180,000	180,000	1,440,000
		선택3	원목마루(거실·주방·복도·각 침실)	4,800,000	480,000	480,000	3,840,000
84D	강마루(거실·주방·복도·각 침실)	선택1	유럽산 포셀린타일(거실·주방·복도)+원목마루(각 침실)	4,000,000	400,000	400,000	3,200,000
		선택2	유럽산 포셀린타일(거실·주방·복도)+강마루(각 침실)	1,800,000	180,000	180,000	1,440,000
		선택3	원목마루(거실·주방·복도·각 침실)	4,500,000	450,000	450,000	3,600,000
84E	강마루(거실·주방·복도·각 침실)	선택1	유럽산 포셀린타일(거실·주방·복도)+원목마루(각 침실)	3,800,000	380,000	380,000	3,040,000
		선택2	유럽산 포셀린타일(거실·주방·복도)+강마루(각 침실)	1,800,000	180,000	180,000	1,440,000
		선택3	원목마루(거실·주방·복도·각 침실)	4,400,000	440,000	440,000	3,520,000
114	강마루(거실·주방·복도·각 침실)	선택1	유럽산 포셀린타일(거실·주방·복도)+원목마루(각 침실)	5,400,000	540,000	540,000	4,320,000
		선택2	유럽산 포셀린타일(거실·주방·복도)+강마루(각 침실)	2,300,000	230,000	230,000	1,840,000
		선택3	원목마루(거실·주방·복도·각 침실)	6,100,000	610,000	610,000	4,880,000

냉장고장 수납시스템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타입)	세부사항	설치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2.12.13	입주지정일
84A	냉장고장 수납 하드웨어 시스템	1,300,000	130,000	130,000	1,040,000
84B	냉장고장 수납 하드웨어 시스템	1,300,000	130,000	130,000	1,040,000
84C	냉장고장 수납 하드웨어 시스템	1,300,000	130,000	130,000	1,040,000
84D	냉장고장 수납 하드웨어 시스템	1,300,000	130,000	130,000	1,040,000
84E	냉장고장 수납 하드웨어 시스템	1,300,000	130,000	130,000	1,040,000
114	냉장고장 수납 하드웨어 시스템	1,300,000	130,000	130,000	1,040,000

침실 불박이장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타입)	세부사항	설치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2.12.13	입주지정일
84A	침실3 불박이장	1,100,000	110,000	110,000	880,000
84B	침실3 불박이장	1,100,000	110,000	110,000	880,000
84C	침실3 불박이장	1,100,000	110,000	110,000	880,000
84D	침실2 불박이장	1,100,000	110,000	110,000	880,000
84E	침실2 불박이장	1,100,000	110,000	110,000	880,000
114	침실3 불박이장	1,100,000	110,000	110,000	880,000

- 84A, 84B의 경우 드레스룸 특화 옵션 선택 시, 발코니 확장시 제공되는 드레스룸 및 드레스룸내 선반과 별도로 침실 1내 일부 공간에 고급형 드레스룸이 설치됩니다.
- 현관 중문 미선택시 중문틀은 시공되지 않으며,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되는 품목으로서 계약시 형태, 제품사양 등에 교체 및 변경을 요청하실 수 없습니다.
- 현관 중문은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 분리 및 시야 차단 목적에 한하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개별옵션 중 바닥재 미선택 시 일반 강마루가 설치되오니 계약 전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플러스옵션 설치 위치 및 품목은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및 품목을 지정 선택할 수 없습니다.
- 플러스옵션 선택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계획, 일부공간의 조명 등이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된 마감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플러스옵션 납부 방법 및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KB국민은행	006001-04-333448	지에스건설(주)
중도금 · 잔금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 **상기 플러스옵션 납부계좌는 공동주택 및 발코니확장 공급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201홍길동'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공급계약서에 명기된 세대별 전용계좌(가상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전 옵션 선택품목 ※ 발코니확장 시에만 선택 가능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선택안		설치장소	공급금액	제조사	비고
84A 84B 84C 84D 84E	선택1	2대	거실 + 침실1	3,490,000	LG전자	
	선택2	3대	거실 + 침실1 + 침실1개소	4,820,000		
	선택3	4대	거실 + 침실1 + 침실2개소	6,440,000		
	114	3대	거실 + 주방 + 침실1	5,290,000		
	선택2	4대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1개소	6,460,000		
	선택3	5대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개소	7,880,000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옵션 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서 시스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부가세 포함) 산정 시 주택형별 면적에 따른 실외기 용량 차이로 인해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 침실1(안방)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 2개소의 냉매 배관만 시공됩니다.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거실은 스탠드형, 안방은 벽걸이형 기준의 냉매 배관 및 관련 시설은 설치하지 않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실내기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 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 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가동 시 발생하는 응축수 배수를 위해 설치되는 드레인 배관은 세대 내 일부 벽체에 노출되어 설치됩니다.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추가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환기형 공기청정 시스템(시스클라인)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선택안		설치장소	공급금액	공급업체	비고
84A, 84B, 84C, 84D, 84E, 114	2대	선택1	거실, 주방	1,840,000	자이에스앤디(주)	
		선택2	거실, 침실1	1,700,000		
	3대	선택3	거실, 주방, 침실1	2,620,000		
	5대	선택4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4,180,000		

- 시스클라인은 선택 옵션에 따라 세대 내 공기 청정화 능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시스클라인은 한국공기청정협회(CA)에서 지정한 소음 기준에 부합하나 개인별 소음인지에 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공기청정기는 천장에 빌트인 형태로 설치되는 제품으로 천장에 설치되는 기타 장애물(스프링클러, 감지기 등)을 고려하여 실시공시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공기청정기 설치 위치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클라인 구성품은 천장형 공기청정기와 리모컨이며 천장형 공기청정기 1대당 제어용 리모컨 1대를 제공하오니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대피공간(전열교환기 설치)과 먼한 침실, 붙박이장 설치 침실은 설치공간 부족으로 천장형 공기청정기와 시스템 에어컨이 병렬배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주방가전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품목	모델명	공급금액	제조사	비고
전 주택형	빌트인 냉장고	S715SI24B	5,750,000	LG전자	흡바형
		S695SI34B	7,650,000		디스펜서형
	빌트인 김치냉장고	K221PR14B	1,450,000		김치냉장고
	광파오븐	MZ385EBTAD	540,000		드로워포함
	식기세척기	DUB22SB2	1,100,000		
	쿡탑	BEI3GTBI	1,220,000		쿠쿠
		CIHR-D303FB	450,000	인덕션2구 + 하이라이트 1구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주방가전 미선택 시 기본형 수납공간 등으로 시공되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가전 제품은 주방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냉장고와 빌트인 김치냉장고 선택에 따라 냉장고장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덕션 쿡탑 설치 시 가스배관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주택형 (타입)	선택안	설치 개소	공급금액	비고
84A	가시광선 투과율 50 / 70	7개소	1,720,000	
84B		8개소	1,850,000	
84C		7개소	1,790,000	
84D		8개소	1,970,000	
84E		7개소	1,830,000	
114		7개소	1,790,000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전 옵션 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가전 옵션	납부계좌, 납부 일정 및 계약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가전 유상옵션(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주방가전) 공사비 납부계좌는 계약 시 개인별로 가상계좌를 부여할 예정이며, 품목별로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유상옵션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공동주택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가전 옵션 선택품목은 시공 전문 자회사인 자이에스앤디(주)에서 계약체결 및 시공 예정으로 계좌가 상이합니다.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지정된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주방가전은 시공 전문 자회사인 자이에스앤디(주)에서 계약체결 및 시공 예정으로 계좌가 상이합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 1항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계약자는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 외 추가 선택품목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상기 유상옵션은 계약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중도금 납부 이후에는 유상옵션 공급주체 및 시공사의 동의 없이 계약 해제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추가 선택품목계약 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별도로 유상옵션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 상기 유상옵션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카탈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형별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유상옵션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분양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일부 품목이 전시되오니 청약 및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품목은 본 공동주택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관리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선택품목 관련 기타 유의사항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 1항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계약자는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 계약체결 시 추가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확장 선택 시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본 공동주택 계약해제 사유와 동일하며, 공동주택 공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함께 해제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급계약에 부수되는 마감공사와 관련된 계약으로 소요자재를 선발주하여 미리 확보하여야 하고, 특히 계약 이후에는 계약 해제, 변경 시 원상회복, 변경공사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는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도품목 계약이 가능한 기간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계약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해당 시공 전문 회사로부터 추가적으로 해제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추가 선택품목 총금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사업 주체에 귀속됩니다. 단,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착수일(공사업체 및 자재선정 등의 업무포함) 후에는 사업 주체는 위약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수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주체의 귀책으로 추가 선택품목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사업 주체는 수분양자에게 총 옵션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본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 공급계약 양도/양수 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공급대금에 대하여 사업 주체는 소비자 상대업종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4호에 의거 영수증을 교부합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카탈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등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추가 선택품목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분양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일부 품목이 전시되오니 청약 및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본 아파트의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 관리하는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해당 시공전문회사 자이에스앤디(주)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됨을 필히 양지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VIII

기타 계약자 안내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 공사·타일 공사·주방 용구 공사 및 위생 가구 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 지정 개시일 전 입주 개시 약 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 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입주예정일 : 2026년 02월 예정 (정확한 입주 일자는 입주 지정 개시일 2개월 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 정리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지정기간은 500세대 미만 단지는 45일 이상으로 하며, 정확한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부대 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집, 커뮤니티시설(피트니스, 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 스쿨버스존) 등

- 단지 내 부대시설(피트니스,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등)은 사업 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실입주 후 '입주자대표위원회(가칭)'에서 결정됩니다.

내진 성능 및 능력 공개 -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

구분	등급
중요도(Ⅰ)	VII-0.193g

※ 내진 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 (MMI 등급, I~Ⅷ)으로 표기

지하주차장 높이

- 지하주차장 유효높이는 지하6층 ~ 지하2층 2.3m로 계획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의무사항		적용 여부	사양, 성능, 설치 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보일러(다목)	적용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 만족제품 적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산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하여야 하며, 절수기기의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3호)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감리 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건축 감리	구조 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통신감리
상 호	(주)서린디앤씨	(주)강구조안전기술	(주)한동엔지니어링	한국안전기술(주)	한국안전기술(주)
금 액	2,578,193,640	86,900,000	517,490,319	577,940,000	134,310,000

※ 감리금액은 감리 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사업 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시행위탁자	시행수탁자	시공사
상 호	(주)씨케이디앤씨	케이비부동산신탁(주)	지에스건설(주)
주 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85, 9층(범어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역삼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청진동, 그랑서울)
법인등록번호	170111-0487787	110111-1348237	110111-0002694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약관 제1조)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 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친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 입주금 등의 납부 (보증약관 제2조)

① 공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 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 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 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 통보 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
(예시: 흡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 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사고 (보증약관 제4조)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이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같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공동주택 공사진행 정보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공동주택 사업장의 공사진행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사업주체는 공급계약체결과 동시에 공급계약자에 대한 공급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공급계약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분양대금 채권의 양도 등

분양자(매도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 관리형토지신탁

- 본 사업은 시행위탁자인 (주)씨케이디앤씨가 시행수탁자 케이비부동산신탁(주)에 시행을 위탁해 진행하는 관리형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시행위탁자인 (주)씨케이디앤씨이고, 아래 '관리형토지신탁'에 관한 사항은 본 모집공고의 다른 내용에 우선합니다.
- 본 사업은 시행위탁자인 (주)씨케이디앤씨, 시행수탁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주) 그리고 시공사인 지에스건설(주)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근거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 공급대금(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납부는 '케이비부동산신탁(주)'명의로 개설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로만 입금가능하며, 동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는 경우(지정계좌 이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시행위탁자, 시공사 및 제3자에게 직접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공급대금을 납부)에는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분양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 공급계약은 신탁법에 의거 시행위탁자 (주)씨케이디앤씨 및 시행수탁자 케이비부동산신탁(주)가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공급계약입니다. 본 공급계약 대상재산에 대한 시공상의 모든 하자보수 책임(사용승인 전, 후 하자를 불문하고, 오시공, 미시공 등을 포함)은 시공사가 부담합니다.
- 매수인은 대상 부동산이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 명의로 이전된 시점 또는 신탁기간 만료,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중에서 빠른 시점에, 케이비부동산신탁(주)가 매도인의 지위 및 시행수탁자의 지위에서 부담하는 모든 권리, 의무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없이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씨케이디앤씨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되고, 공급계약상의 매수인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 (주)씨케이디앤씨에게 면책적,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매수인은 이에 동의합니다.
- 매도인으로서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분양대금 반환, 입주지연시 지체상금, 매도자의 하자 책임, 소유권 이전 등)는 시행위탁자이자 실질적 사업주체인 (주)씨케이디앤씨가 부담하며, 매수인은 사업주체(신탁사)인 케이비부동산신탁(주)에 대하여 분양계약과 관련한 손해배상 및 비용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케이비부동산신탁(주)는 중도금 대출금 알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매수인은 중도금대출기관 미지정 등으로 인한 분양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업의 안정적 진행을 위하여 분양대금이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우선수익자 지급금 등의 상환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공급대상 주택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분양계약체결일 이후 내장 및 외장 재료의 수급여건, 현장시공여건, 입주자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수분양자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 통보 등 절차를 거치는 사항이 있음을 인지하고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의 분양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케이비부동산신탁(주)에게는 발행의무가 없으며, 발행은 (주)씨케이디앤씨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발행하기로 합니다.

IX

유의사항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통	일반사항	각종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 또는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 등의 추가 설치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단지와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이상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와 기타 홍보물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동법시행령 제5조 및 관계법령에 의거 적용됩니다.
		일부 세대는 공사품질관리를 위하여 선행시공 세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인허가	각종 홍보물은 2022년 05월 사업계획승인 변경 도면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
	홍보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학교,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유보지 등)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또는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p>최초 사업계획승인일이 2021년 12월로 소방내진설계가 적용됩니다.</p> <p>현장여건 반영,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p>	
사업지 및 도로 단지 주변 현황	<p>단지 북측에는 동대구로 80길(현재8m→11m로 계획), 동측에는 국채보상로 180길(현재8m→12m로 계획), 서측에는 동대구로 74안길(현재8m→10m로 계획)가 접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현장을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p> <p>향후 소음영향평가 실시 후 결과에 따라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p> <p>사업부지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p> <p>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p> <p>단지 경계에는 투시형 헨스(방음벽 포함) 또는 조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행정관청의 지침 등에 따라 설치여부, 구간, 재질, 규격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부지내 옹벽 지지를 위해 지하 매설물이 설치될 경우 영구 점용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p> <p>기반시설의 위치, 도로, 하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분묘 및 송전탑 등 혐오시설 유무, 주변 개발현황 등 단지 주변환경에 대해서는 각종 홍보물 및 모형과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p> <p>인접 지역 개발 등으로 향후 공사중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본 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p> <p>인접 지역 개발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 바랍니다.</p> <p>본 단지는 근린공원이 인접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p> <p>단지 주변의 도시계획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및 기반시설 등은 해당관청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양도 예정이며, 조성계획 및 설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인·허가 협의 결과에 따라 단지내 정화조가 설치될 수 있으며, 101동 인근에 정화조 연도가 설치될 예정이나 실시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또한 정화조 연도 설치로 인해 인접세대는 소음, 진동, 냄새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p> <p>사업지 주변 단지내 보도의 무상점용 및 사용권은 수성구청에 있으며, 단지내 보도는 단지내 입주자가 유지, 관리하여야 합니다.</p> <p>모형 및 CG에 표현된 인접건물, 주변현황의 부지레벨, 형태, 크기, 마감 등은 당사와 무관하며 해당 사업계획에 따르며 실체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사업부지 남측 대지경계 인접부는, 주상복합 계획에 따라 부지레벨이 변경될 시 단차형성에 따른 옹벽 또는 조경석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p> <p>사업부지 북측 기존 건물과의 단차 형성에 따라 옹벽 또는 조경석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p> <p>본 단지는 비행안전제6구역(전술)으로 주변의 항공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p>	
	학교	<p>본 아파트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방식 및 위탁 유무에 대해서는 입주예정자의 협의에 따라 결정 됩니다.</p> <p>초등학교의 경우, 대구시 동천초등학교는 현재 학교시설 부족으로 유입학생의 배치가 불가합니다.</p> <p>단, MBC일대에서 야시골공원 북동쪽 순환로를 따라 범어초로 가는 보차도 구분된 안전한 통학로가 조성되고, 선행개발사업자에 의해 개축 진행중인 범어초의 개축규모가 확대되고, 공동주택 입주 초등학교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통학지원이 있을 경우, 범어초로 배치 예정입니다.</p> <p>사업시행자의 통학차량 및 차량 탑승 안전요원은 7년간 지원하게 되며, 지원기간 종료후에는 별도 통학지원이 없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향후 배정방법은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p>

		중학교는 2학교군(수성구)내 분산배치 가능합니다. 향후 배정방법은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단일학군(광역배정) 및 일반학군(1학군) 내 분산배치 가능합니다. 향후 배정방법은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학생배정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사업추진계획의 변동 및 관할기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동별 현황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차량 통행 및 보행자로 인한 빛의 산란, 소음, 사생활 침해, 쓰레기 보관소의 악취, 분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101동 서측면에는 발전기용 급배기 D.A가 설치되며 발전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 연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동은 주변 건물 및 구조물, 기존 건물의 재건축 및 증축, 단지 내 인접동 및 같은 동 다른 라인에 의해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여건에 따라 위치, 크기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지하1층에 판매시설이 계획되어있어서, 104동은 지하1층에서 세대로의 진입이 불가합니다. 그 외 동은 지하1층에서 세대로의 진입이 가능합니다.
		일부 동 호에는 이삿짐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단지내·외에 레벨차가 있는 구간에는 자연석쌓기, 비탈면, 옹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필로티가 설치되는 동은 주행 차량 또는 보행자로 인해 생활권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고 캐노피의 형태, 재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 동별 계단실 내 창호는 일부는 고정창, 일부는 프로젝트창으로 적용되며, 프로젝트창의 적용위치는 층별, 동별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홀 내 창호 크기는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단지 북측 및 남측에는 주상복합단지가 계획되어있어서, 소음 피해 및 사생활 침해, 일조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각각 구분하여 설치됩니다.	
	각 동의 옥상에는 인명구조공간이 설치됩니다.	
	단지계획 (설계, 디자인,마감)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배치도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공사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 근린생활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p>단지 내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기, 통신 등 각종 인입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 및 층별, 향,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악취발생·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주거동의 동, 호수, 층별 위치에 따라 난간턱의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p>
<p>어린이집, 아너스클럽(경로당), 부대시설과 상가의 외부는 석재, 벽돌, 타일, 금속 등 기타자재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p>
<p>부대시설 및 상가용 실외기가 외부 또는 옥상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인접한 세대 및 공간에서 미관의 저해와 소음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아파트, 오피스텔, 상가용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1층 주차장 공간내에 설치되어 냄새, 소음, 분진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지상1층에 쓰레기분리수거장(아파트, 오피스텔), 재활용창고가 설치되므로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바랍니다.</p>
<p>지하1층 내부에 쓰레기분리수거장(근생 및 판매시설), 택배보관소(근생 및 판매시설)가 설치되므로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바랍니다.</p>
<p>D.A(Dry Area)가 지상층 및 단지외부 곳곳에 설치되므로 미관의 저해와 소음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동 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 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지하 주차장 경사로 등), 어린이집, 조경시설(수공간 등), 주민운동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 자전거 보관소, 지하주차장 주차램프, 단지주출입구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빛공해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구간별 사업부지 단차 구간에 조경석 쌓기 또는 옹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인허가 조건, 미관, 구조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동 상부에 공용부 전기 생산을 위한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규모(크기, 높이, 개소)는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 배치 및 일조량에 따라 일부 동 혹은 전체 동에 분산 설치되며, 구조물에 의해 설치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연도, 고가수조, 경관조명, 위성안테나, 공청 안테나, 태양광 집광판, 이동통신 중계기, 항공장애등,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 침해,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p>
<p>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계산에 따라 최적화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은 비 내력벽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p>
<p>치장석재/벽돌 및 필로티 마감은 비구조요소 내진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각 동 지상16층에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p>
<p>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가 협소하여 창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바랍니다.</p>

	<p>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각 동 최상층에는 물탱크실 및 엘리베이터 기계실, 상업시설(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주방배기 탈취시설 등이 설치되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101동 상부에는 주거용, 비주거용 정화조 배기관이 설치될 예정입니다.</p> <p>단지 배치 계획상 오피스텔동과 혼합 배치되어 일조권 및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p> <p>일부동은 필로티가 설치되며, 필로티의 층고는 각 동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주출입구 및 부출입구를 제외한 보행자 전용 통로는 개방형으로 시공되므로 외부인원의 통행제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p> <p>단지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담장은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주변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배치도상에 표현된 D.A의 위치, 수량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스프링클러 배관 관경 및 기준 개수 등 소화 시설물의 기준은 수리계산에 의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p> <p>조경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단지 내 조경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발전기 연도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단지 내 통행로 등에 인접할 경우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p> <p>수경 시설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관리·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p> <p>전기통신사업법 제 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 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단지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통신설비 설치 예정위치 : 103동 지하4층 EPS/TPS, 지하2층 PIT, 102동 16층 TPS</p> <p>도시가스 배관의 세대내 원활한 인입 및 가스계량기 설치를 위해 다용도실의 천정고 및 마감면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p> <p>일부동 전면 또는 후면에 외부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인근 세대는 소음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전 단지 모형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소방용 안전매트 구간에는 교목 및 관목 식재가 되지 않으며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식재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유아 놀이터는 어린이집 전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p> <p>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시설 상부에 옥상조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조경계획은 옥상의 환경을 고려해 실시설계 및 시공시 확정됩니다.</p>
외관계획	<p>외창부 벽에 입면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세대의 외벽 및 발코니, 지붕 등에 장식용 구조물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p> <p>옥상구조물 및 외벽장식물의 형태와 크기, 위치, 색채, 디자인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단지 내 건물의 외관 디자인(색채, 줄눈 계획, 입면 패턴, 마감재, 옥상 구조물 등), 공용부 디자인(동 출입구, 지하층 출입구, 필로티, 캐노피, 주차장 램프, 경비실, 부대시설 등), 외부 시설물(문주, DA, 자전거보관소, 쓰레기보관소 등), 조정 디자인, BI 위치 및 내용, 난간의 형태, 옹벽 디자인 등은 설계 및 인-허가 과정, 발주처 협의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의 고유한 업무 영역으로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p> <p>아파트 및 오피스텔 저층부는 석재, 석재뿔칠, 페인트 등 기타 자재로 마감되고, 주동 형태에 따라 각 자재의 적용비율은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인-허가 및 현장 여건, 디자인 변경 등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p> <p>단지 문주는 진입공간 배치 현황 및 현장 여건에 맞춰 형태, 크기, 배치가 결정되며 문주 설치로 주 진입부에 위치한 일부 저층세대에서는 세대 조망에 간섭 및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문주에 설치된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p> <p>외부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은 단지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본 아파트의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에 대해 타사 및 당사의 타 단지를 비교하여 추가 설치 또는 교체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p> <p>당 단지에 적용된 외관특화, 입면, 색채 및 마감재 등 디자인 일체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습니다.</p> <p>옥상 및 외벽에 경관조명, 조형물 및 로고(BI) 등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 일조,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LED조명으로 인하여 인접세대는 빛반사로 인한 눈부심, 소음 등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p> <p>상가부 및 지상 저층부 주변으로 LED 조명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빛반사로 인한 눈부심, 소음 등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p> <p>경관조명은 빛공해 심의결과, 빛공해 피해 등에 따라 설치 및 작동에 제약이 있거나 위치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p> <p>2층세대의 비확장발코니 외부에 접이식 옥외피난계단이 설치됨에 따라 1층~2층 사이 외벽 마감재가 일부 가려집니다.</p>
공용시설	<p>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부대시설에 인접한 세대는 해당 시설 이용 및 부속시설물 (에어컨실외기, 배기팬, 설비시설, 쓰레기수거시설, 옥외 엘리베이터 등)로 인해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단지내 계획된 부대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클럽자이안, 어린이집 등) 및 산책로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p> <p>주민공동시설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자에 의해 결정됩니다.</p> <p>주민공동시설의 기본 마감 외의 시설운영을 위한 내부 집기류(이동가구, 비품, 서적, 스탠드 등)는 제공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 주체는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동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p> <p>주민공동시설 등 부대시설의 성능개선 또는 인허가 협의결과에 따라 실 시공 시 위치, 동선, 실내구획, 입면 디자인,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본 아파트 단지내에 쓰레기 야적장 및 분리수거장, 재활용 보관소등이 설치되어 이로 인한 일부 세대는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요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클럽자이안(피트니스, 작은도서관 등), 공유오피스, 부속동(아너스클럽, 어린이집 등) 및 일부 공용부에는 입주지정기간을 전후하여 입주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입주관리업무를</p>

	<p>진행하며, 입주 후 약 24개월까지 AS업무를 위한 사무실 및 창고가 설치되어 운영됩니다. 각 운영기간은 단지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도 및 전기세 등은 관리비로 부과됩니다.</p> <p>지상 및 지하층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공동시설 내 기둥이 추가되거나 공간계획과 인테리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p> <p>주민공동시설 난방 급탕을 위한 보일러 연도가 외부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 세대는 조망권, 소음, 진동, 열기, 사생활 침해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주민공동시설은 각각 분리되며, 세부운영방안은 추후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주민공동시설(클럽자이안) :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 스쿨버스존 - 지상1층 위치 - 오피스텔 주민공동시설 : 공유오피스 - 지하1층 위치 <p>근린생활시설 및 부속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인해 주변 인접 동에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으며, 설치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 및 크기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p>
공용설비 및 시스템	<p>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용 전기세 및 하수도 요금이 발생되고 해당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p> <p>지하층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공조시스템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p> <p>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내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당 현장은 도시가스 원격검침계량기가 설치되는 아파트로 교체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p> <p>관련 법령 및 인허가 조건에 의해 지하저수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p> <p>지하주차장, 필로티 및 근린생활시설에는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p> <p>공용부위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보안 등) 및 경관조명에 의한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지하 주차장 출입구의 지붕 및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외부계단, Top Light, 제연휨룸, DA)과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및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p> <p>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기계실, 휨룸 및 이와 유사한 기계 설비 장치가 설치되는 실에 인접한 곳에서는 장비로 인한 소음, 진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p> <p>무인택배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되며, 무인택배함은 코어별 1개소 지상1층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는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홈네트워크를 통한 화상통화는 불가합니다.</p>
주차장	<p>지하 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p> <p>주차장은 아파트 지하 565대, 근린생활시설 33대, 판매시설 35대, 오피스텔 71대 총 704대(경차 및 장애인주차, 전기차충전 중 완속 충전소는 포함, 급속 충전은 제외)로</p>

		계획되어 있습니다.
		구조 형식상 지하주차장의 주거동 직하부 주차구획구간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도어 개폐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은 지하 3층 ~ 지하 6층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구획별로 지하주차장 층수 및 주거동 연결통로의 길이 및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주차장은 지하2층에 계획되어있으며, 지하2층 내에서 차단기로 2개의 영역(①오피스텔, ②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으로 주차공간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구조는 공사 여건에 따라 PC 또는 데크로 변경될 수 있으며, 피트(PIT)공간의 구획, 높이 및 면적, 비내력벽의 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비주거(급속 0대, 완속 3대) 3대 / 주거(급속1대, 완속 11대) 12대 설치되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의 일부 구간은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의 간섭으로 통행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의 진입 및 주행 유효높이는 2.3m로 택배차, 사다리차, 대형차 등의 진입은 불가합니다. 지하2층~지하6층 주차통로의 유효높이는 2.3m이며, 주차면의 유효높이는 2.1m입니다. 다만, 시공과정에서 각종 배관공사 등의 사유로 유효 천정고는 일부구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하1층은 근생 및 판매시설로 계획되어 지하주차장 공간은 없습니다. 외부에서 지하주차장 램프 진입하여 지하2층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아파트와 비주거(오피스텔, 근생, 판매시설) 주차출입구는 각각 1개소로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출입구는 단지 동측에 위치하며, 비주거 주차출입구는 단지 서측에 위치합니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의 분양시점에 따라 MD계획이 미확정될 수 있으며, 추후 MD계획 확정에 따른 면적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용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지하1층 비주거 차량 진출입구에 인접하여 설치되며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이 발생할 수 있고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용 탈취설비, 실외기, 연도 및 각종 장비류로 인하여 인근동에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대지 및 전면 도로의 경사도에 따라 호실별 출입문, 바닥면의 높이가 상이할 수 있으며, 단차부의 위치 및 바닥면의 높이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위 세대	평면	본 사업은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형별 전용면적,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 세대의 천장 높이는 2,300mm로 시공됩니다.
		입주 시 세대내에 침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를 개별적으로 추가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기 바랍니다.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p>현관, 현관창고, 비확장발코니, 실외기실, 하향식피난구실, 보일러실 등에는 바닥난방이 시공되지 않으며, 욕실 및 다용도실의 경우, 마감여건상 일부 구간에만 바닥난방이 시공됩니다.</p> <p>세대 내부 벽체는 마감 품질 확보를 위하여 재료(콘크리트, 조적, 경량벽체), 길이 및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세대간 벽체에는 공사를 위한 작업통로가 설치될 수 있으며, 작업 완료 후 조적 또는 건식벽체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p>	
발코니	<p>발코니는 계획용도에 따라 수전, 드레인 또는 선홈통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치와 개수가 변경될 수 있고,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p> <p>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는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p> <p>또한, 발코니 측벽 및 천장에 최소 결로방지를 위한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 내부폭 및 크기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p> <p>세탁기와 보일러가 설치되는 공간 및 발코니에 수전과 실외기실에 선홈통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p> <p>환기시스템 설치 또는 시스템에어컨 선택에 따라 실외기실 또는 다용도실 천장에 덕트, 배관 등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고, 내부 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화재 등 유사시에는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대피하여야 합니다. 단, 각 동 2층은 발코니(오피스텔의 경우 다목적실) 외부에 설치된 접이식 옥외피난계단을 통해 피난층으로 대피하여야 합니다.</p> <p>발코니 출입용 분합문 손잡이는 한쪽에만 설치됩니다.</p> <p>하향식 피난구 설치세대는 비상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해 항시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 및 방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시공사의 책임범위가 아닌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p> <p>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의 발코니가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p> <p>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각실과 발코니가 만나는 면에 창호가 설치되며 발코니 외부쪽으로는 창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층 및 하층세대 단열 및 배수설계로 인해 발코니의 천장고 및 창호 높이가 축소 시공되며 발코니의 바닥레벨이 거실 및 침실보다 높게 시공되어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p> <p>기본형(비확장) 세대에서 전체 발코니가 연결되어진 경우 각실이 아닌 거실 혹은 주방 등 특정실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게 되어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창호	<p>저층 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발코니 확장 시 아파트 외부 창호는 일부 세대의 발코니 장식물 부착 및 내풍압 구조검토에 따라 세대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 방향, 날개 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발코니 외부창 및 내부창호의 사양(제조사, 브랜드, 디자인, 개구부 및 프레임 사이즈, 창틀, 하드웨어, 유리두께 등)은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나 동등급 이상으로 설치됩니다.</p>

	<p>현장 여건 및 입주자 사용성 개선을 위해 목문의 사양(문틀 및 문짝의 폭, 높이, 재질, 개폐방향,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보일러 설치로 다용도실 창호 일부가 고정되어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고정창에는 손잡이가 설치되지 않습니다.</p>
	<p>창호에 설치되는 방충망의 형태는 본 공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84C타입 중 103동 2층~15층까지 세대의 드레스룸 창은 인허가시 소방서 협의에 따라 동일 타입 다른층의 창호폭보다 크게 적용되며, 창 하부 벽면에 발판이 설치되며, 창호쪽으로는 드레스룸 옷걸이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또한 드레스룸 환기 개선을 위해 픽스 창이 아닌 개폐가 가능한창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p>
	<p>아파트 2~15층의 세대에는 하향식 피난구실에 소방관 진입창이 설치되며 하부벽면에는 발판이 설치됩니다. 단, 103동 84C 타입의 소방관 진입창은 하향식 피난구실이 아니라 안방 드레스룸 창에 적용됩니다.</p>
	<p>유리난간이 적용된 외부창호를 통한 이삿짐 운반 시 유리난간의 파손우려 및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유리난간이 적용된 창호로는 이사짐 운반이 불가합니다.</p>
	<p>아파트에 적용되는 소방관진입창은 소방서 협의에 따라 위치 및 규격 등이 결정되어 적용되었습니다.</p>
	<p>불박이 가구(신발장, 불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로 가려지는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가구 하드웨어(힌지, 레일, 조명, 스위치 등)는 본 공사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세대 내 적용되는 마감자재(석재류, 타일류, 상판류, 시트류 등)는 자재 특성상 색상, 무늬 및 패턴 등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공사시 나누기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주택형별 옵션선택에 따라 가구 및 수납계획(디자인, 크기, 도어갯수 등), 우물천장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p>
	<p>욕실 출입문(부부, 가족)은 본공사 시 PVC 계통(ABS) 도어로 시공됩니다.</p>
	<p>인접세대간 사생활 침해 최소화를 위해 일부세대 아트월 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설비배관 등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세대 내 욕실에 설치되는 위생도기, 수전류 및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의 설치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냉장고장 형태는 옵션사항이며, 이에 따라 냉장고장이 상이하게 설치되오니, 계약 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미선택시 냉장고(입주자 직접 설치 가전)가 제품 사양에 따라 일부 돌출될 수 있습니다.</p>
<p>욕실거울, 수전류,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 및 샤워부스,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p>	
<p>목창호, 시트판넬 등의 고정을 위해 본공사시 Staple Tacker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p>	
<p>욕실장 및 샤워부스, 시스템선반의 형태,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다용도실 또는 발코니에 건조기 사용시 온도 습도가 상승될 우려가 있어, 결로 및 기타 하자방지를 위하여 환기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p>	
<p>세대 내 적용되는 유리류는 자재 특성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p>	
<p>세대 내 적용되는 포셀린 및 도기질 타일은 대형타일 및 재료적 특성상 인접타일과 일부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색상차이, 줄눈 두께 상이, 자연무늬(베인 등)가 있을 수 있습니다.</p>	
<p>양변기 인근 매립형 휴지걸이를 설치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는 노출형 휴지걸이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p>	

	(유상옵션 품목인) 현관중문은 주택형별 사양(개폐타입, 사이즈, 색상 등)이 다르며, 본공사시 형태, 재질,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등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유상옵션 품목인) 현관중문 설치 유무에 따라 신발장의 형태나 규격, 설치위치, 도어 개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PVC 단열도어는 본 시공시 동등 성능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침실과 욕실도어에 손끼임방지 장치가 제공됩니다.
	기본형 또는 확장형 평면에 제공되는 품목 (주방가구, 냉장고장, 붙박이장, 드레스룸 선반 등)이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전 확장시 제공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스타일옵션 및 마감특화 패키지옵션, 공간옵션 등에 따라 타입별 평면 및 마감재 적요부위가 상이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목마루의 특성상 옹이는 자연스러운 것으로서 하자가 아닙니다.
	스타일 옵션 선택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계획, 일부공간의 조명 등이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된 마감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 내 창호 상부의 커텐박스는 천장 속 단열마감을 위하여 커텐박스의 폭, 깊이, 길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기기계설비	주방 및 거실의 천장에 도시가스 법규에 따라 가스누출탐지를 위한 점검구 또는 누출 점검이 가능한 설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환기시스템 및 욕실배기, 주방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욕실에는 바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됩니다.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준공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 출입 시 욕실문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기 디퓨저,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설치위치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에어컨은 실외기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시스템 에어컨 옵션선택시 기본 냉매매립배관은 천장 속 노출 냉매배관으로 변경 시공되며, 시스템에어컨설치 공사비는 변경공사를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에어컨 설치시에는 별도의 실외기 고정가대 및 에어가이드 설치를 하여야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에어컨 가동시 실외기실 루버는 반드시 열려있어야 되며, 루버 부근에 물건 적치시 공기 순환 장애로 인한 효율 저하 및 과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제어시스템 및 온도, 환기조절기 등은 시스클라인 선택유무 및 내부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및 소방감지기는 견본주택 소화 시설물로서 본공사 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 (본 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장, 커텐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층 세대 하부에 제연 및 지하시설물 환기를 위한 배기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소음,진동,냄새 등에 의해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외벽에 가스 입상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가스계량기는 실내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욕실, 드레스룸 및 펜트리의 난방제어를 위한 온도조절기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온도조절기(거실용 또는 침실용)에 의해 통합제어 될 수 있습니다.
		침실, 알파룸, 베타룸이 옵션 선택에 따라 대형 드레스룸 및 펜트리로 변경될 경우 온도조절기는 설치 되지 않을 수 있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온도조절기(거실용 또는 침실용)에 의해 통합제어 될 수 있습니다.
		자이 스마트패스 시스템의 스마트폰 연동은 스마트폰 OS 정책에 따라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패스카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세대 내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 전자식스위치,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의 위치 및 수량은 단위세대 평형, 타입, 옵션, 아트월 위치 등에 따라 변경됩니다.
		전기쿡탑 옵션선택시 가스배관은 가스계량기까지만 제공되며, 옵션비용은 해당 금액을 고려한 금액입니다. 이경우 가스쿡탑 설치가 어려우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방옵션 선택시 후드 타입에 따라 인근 천정에 자동식소화기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거실 인근 벽체에 설치되는 독립형 센서(미세먼지 및 CO2)는 시스클라인 옵션 선택 시 장비 본체 일형 센서로 통합되어 운전됩니다. (독립형 센서는 제외됩니다.)
		본 아파트는 도시가스 연료를 사용하며, 세대별 보일러를 설치한 개별난방 방식이 적용됩니다.
		세대 보일러는 적절한 용량을 선정하였으나, 온수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온수 사용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2동 5호라인 84A 실외기실, 침실1, 드레스룸, 하향식 피난구, 발코니, 103동 2호라인 84B타입 발코니, 하향식 피난구, 침실1, 드레스룸, 101동 4호라인 84D타입 침실3, 주방, 다용도실, 104동 2호라인 114타입 주방, 침실1, 드레스룸(옵션 선택 알파룸), 발코니 외부 창문 위에 드렌처 헤드 설비가 설치됩니다.
건본 주택	건본주택	건본주택 내에는 기본제공 마감재 이외의 유상옵션 품목 또는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건본주택의 온도조절기, 환기디퓨저, 스프링클러 헤드, 시스클라인, 시스템에어컨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타입도 옵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건본주택의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타입도 옵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건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건본주택용으로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건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건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건본주택에 미건립된 주택형의 경우 건본주택에 설치된 유사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 시 상담을 통해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건본주택 내 설치된 Basic Kitchen은 발코니 확장 계약시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반드시 당사 홈페이지 평면 안내 및 계약 시 상담을 통해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건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건본주택용으로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건본주택에 설치된 위생기구는 유상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세대는 기본형 위생기구가 설치됩니다.
	건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는 유상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세대는 GS건설 표준화조명이 설치됩니다.
	사이버 건본주택 단위세대 조명은 색온도 3500K적용되며, 사이버 건본주택에서 보여지는 색상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가구 내에 설치되는 조명의 색 온도는 일반 조명의 색 온도와 다를 수 있음)
	사이버 건본주택의 외부영상, CG, VR의 외관, 조경, 주변계획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실제 다를 수 있습니다.
	사이버 건본주택에 설치되는 아이টে은 화각에 의한 왜곡 등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실제와 달라 보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2조제5항 및 「사이버 건본주택 운용기준」등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로 사이버 건본주택을 운영하였으며, 차후 사이버 건본주택 관련 추가 시정조치 등을 사업주체에 주장할 수 없습니다.

[기타사항]

- 본 단지의 판매 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 시 현재 조건을 확인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으니 이 점 양해 바랍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 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시행변경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 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 주체, 중도금대출 취급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시행위탁자, 시행수탁자, 시공사와 무관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급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건본주택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 홈페이지 : <https://xi.co.kr/DGB>

■ 건본주택 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43-18

■ 분양 문의 : 1544-7720

시행(신탁사)  KB 부동산신탁 위탁  CK(주)CK디앤씨 시공  GS 건설 문의 **1544-7720**

